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 |
|----------------|----------------|
| 선 람 | 기 관 의 장 |
| | |



제 601 호 2018. 2. 27(화)

조 례

| | | |
|--------------|--|----|
| 남해군조례 제2282호 |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 1 |
| 남해군조례 제2283호 |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3 |
| 남해군조례 제2284호 |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5 |
| 남해군조례 제2285호 | 남해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 11 |
| 남해군조례 제2286호 |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외 1건 일괄개정조례 | 13 |
| 남해군조례 제2287호 |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 |

규 칙

| | | |
|--------------|---|----|
| 남해군규칙 제1132호 |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수 규칙 외 4건 일괄개정규칙 | 15 |
| 남해군규칙 제1133호 | 남해군 조정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17 |

고 시

| | | |
|-------------|------------------------|----|
| 제2018 - 23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 18 |
| 제2018 - 24호 | 초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19 |

공 고

| | | |
|--------------|--------------------------|----|
| 제2018 - 180호 | 어업면허 처분 및 어업권 포기 신고수리 공고 | 21 |
| 제2018 - 201호 | 공시송달 공고 | 22 |

|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5, 행정 3045)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282호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2월 2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군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의 요청) 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 할 수 있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83호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2월 2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남해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 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원
2. 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필요한 비용
3. 소방기술 습득을 위한 행사에 필요한 비용

제4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84호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2월 2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른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되는 사회재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군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의 지연, 재난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자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해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 나.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 다. 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2. 그 밖에 군 대책본부회의에서 지원하도록 결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다목은 신고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8조(지급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반환통지)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원의 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군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 | | |
|----|--------|-----|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 | | | | | | |
|------------|------------------|-------|---------------|-------------------------------|-------|--------------|
| 성명 | 생년월일 | - | | | | |
| 주소 | | | | | | |
| 연락처 | 휴대전화 | - - | 통신사명 | []KT []SKT []LGU+ []기타 | 가입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
| | 유선전화 | () - | 통신사명 | | 가입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
| 세대주 여부 | [] 세대주, [] 세대원 | 가족 수 | 명 (본인 포함 세대원) | | | |
|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 명 | [비전문계 / 전문계] | | | |
| 도시가스 사용 여부 | 여 [], 부 [] | 가입자명: | 생년월일: | | | |
| 계좌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

3. 피해내용

| | | | | | | |
|----------|-------------|---|-----|-----|---|---|
| 피해 발생 일시 | | | | | | |
| 피해 발생 장소 | | | | | | |
| 인명 피해 | 신고 |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업피해(휴업 [] / 폐업 [] / 실직 []) | | | | |
| | 확정 |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 | | | |
| 시설 피해 | 시설명 | ① | ② | ③ | ④ | |
| | 총면적(소유+임차) | ① | ② | ③ | ④ | |
| | 면허·허가·등록 번호 | ① | ② | ③ | ④ | |
| | 피해 물량 | 신고 | ① | ② | ③ | ④ |
| | | 확정 | ① | ② | ③ | ④ |
| | 피해 구분 | ① | ② | ③ | ④ | |
| | 피해 원인 | ① | ② | ③ | ④ | |
| 용자신청 여부 | [] | [] | [] | [] | | |

4. 확인사항

| | | |
|-----------------|--------------|-----|
| 동일세대 신고 여부 | 여 [], 부 [] | 내용: |
| 타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 여 [], 부 [] | 내용: |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2285호

남해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2월 2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빈집”이란 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빈집 정비의 대상) 빈집 정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4. 그 밖에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빈집 철거 등) ① 군수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 1. 제6조에 따른 빈집 정비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건축위원회에서 장기간 공공용지로 필요하다고 조건부 의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철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실시한 빈집 정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남해군 조례 제2286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외 1건 일괄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외 1건 일괄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2월 27일

남 해 군 수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외 1건 일괄개정조례**

제1조(「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

제2조(「남해군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
군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5조제3항 중 “부락”을 “마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87호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2월 2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경상남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남해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각각 “기부심사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32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외
4건 일괄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외 4건 일괄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8년 2월 27일

남 해 군 수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외
4건 일괄개정규칙**

제1조(「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견습”을 각각 “수습”으로 한다.

제2조(「남해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의 개정) 남해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제3조(「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3항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제4조(「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본문 중 “다음에 제기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

로 한다.

제5조(「남해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남해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규칙 제1133호

남해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공포한다.

2018년 2월 2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남해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8 - 2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1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화천(지방하천)
2. 성 명 : 하점0, 하민0
3.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4. 점용목적 : 태양광발전 진입 교량 설치
5. 점용위치 :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56-21
6. 점용면적 : 영구점용(427㎡), 일시점용(1,233㎡)
7. 점용기간 : 2018. 2. 21. ~ 2020. 8. 20.(일시점용)

남해군 고시 제2018 - 24호

초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3일

남 해 군 수

1. 대 상

| 지구 | 위 치 | 지 정 내 용 | | | 해제사유 | 비고 (지정일) |
|----|-------------------------|----------|----|-----------|--------------------------|--------------|
| | | 유형 | 등급 | 면적 (㎡) | | |
| 초전 |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556번지 일원 | 해일 위험 | 나 | 37,900 |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소 해소 | 2017. 6. 13. |

2. 해제일 : 2018. 2. 23.

3. 문의처 : 남해군 안전총괄과 (☎ 055-860-3292)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도면 1부.

□ 초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도면



공 고

남해군 공고 2018년 - 180호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포기 신고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 면허번호 |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 어장 위치 | 면허 면적 (㎡) | 면허기간 | 어업권자 | | 비고 |
|---------------|-----------------|----------|-----------------|-----------------------------------|---------------------------|------------|----------|
| | | | | | 주소 | 성명 | |
| 남해양식 제501호 | 패류양식 (바닥식) | 창선 서대 | 24,000 | 2018.02.12 2028.02.11 (10년) | 남해군 창선면 홍선로 1484-1 외1명 | 김창용외 1명 | 대체 개발 |

○ 양식어업권 포기신고 수리사항

| 면허번호 |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 양식물 | 어장 위치 | 면허 면적 (㎡) | 면허기간 | 어업권자 | | 비고 |
|---------------|-----------------|-----|----------|-----------------|-----------------------------------|---------------------------|------------|----------|
| | | | | | | 주소 | 성명 | |
| 남해양식 제379호 | 패류양식 (바닥식) | 피조개 | 창선 진동 | 30,000 | 2012.08.27 2022.08.26 (10년) | 남해군 창선면 홍선로 1484-1 외1명 | 김창용외 1명 | 대체 개발 |

남해군 공고 제2018 - 201호

공시송달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정거소하천 정비공사 편입토지 보상 협의」 요청을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협의를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토지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1일

남 해 군 수

1. 공사의 개요

- 가. 공 사 명 : 정거소하천 정비공사
- 나. 공사위치 : 경남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206-1번지 외 222필지
- 다. 공사내용 : 하천정비 L=2,180m, B=10m
- 라. 공사기간 : 2018.1. ~ 2019.12.
- 마. 공사시행자 : 남해군수

2. 대상지 및 물건내역

- 가. 토 지 : 경남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산 80-2번지 외 19필지
- 나. 지장물건 : 돌담 30㎡, 감나무 1주(석평리 1002-1)

3.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협의기간 : 2018. 2. 1. ~ 2018. 4. 30.
- 나. 협의장소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 다. 대상토지 : 붙임참조
- 라.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통,

입금통장 (본인명의) 사본 1부, 인감도장.

※ 소유자 사망자는 상속절차 이행 후 협의 가능하며, 근저당 및 가압류는 말소 후 협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사항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 055-860-3294 남해군 안전총괄과 박정곤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편입토지 및 지장물조서 1부.

편 입 토 지 조 서

| 순번 | 소재지 | 지번 | | 지목 | 지적면적(잔여지) | 감정기관 | | 평균단가(원) | 보상금액(원) | 소유자 | | 성명 | |
|----|-------------|--------|--------|----|-----------|------|-------|---------|---------|---------|------------|--|-------|
| | | 분할전 | 분할후 | | | (A) | (B) | | | 주소 | 비고 | | |
| 1 |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 신80-1 | 신80-2 | 임 | 94 | 3 | 91 | 7,400 | 7,200 | 7,300 | 21,90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로147번길 11, 3동 511호(반여동,창신아파트) | 김 * 순 |
| 2 |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 1025-1 | | 답 | 433 | 102 | 331 | | | 46,500 | 4,743,000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80 | 이 * 홍 |
| 3 |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 1024-1 | 1024-4 | 답 | 555 | 52 | 503 | 49,000 | 49,000 | 49,000 | 2,548,000 | 부산 사상구 신철동 | 장 * 진 |
| 4 |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 1028-1 | | 전 | 122 | 12 | 110 | 47,000 | 46,000 | 46,500 | 558,000 | | 이 * 근 |
| 5 |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 1002-1 | | 대 | 195 | 11 | 184 | 80,000 | 79,000 | 79,500 | 874,500 | | 하 * 수 |
| 6 |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 407 | 전필 | 답 | 13 | 13 | | 58,000 | 57,000 | 57,500 | 747,500 | | 장 * 표 |
| 7 |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 382 | 382-1 | 전 | 76 | 56 | 20 | 52,000 | 51,000 | 51,500 | 2,884,000 | | 장 * 표 |
| 8 |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 384-1 | 384-4 | 전 | 618 | 186 | 432 | 49,000 | 49,000 | 49,000 | 9,114,000 | | 장 * 득 |
| 9 |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 384-1 | 384-5 | 전 | 618 | 22 | 596 | 49,000 | 49,000 | 49,000 | 1,078,000 | | 장 * 득 |
| 10 |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 375 | 375-1 | 답 | 340 | 289 | 51 | 53,000 | 53,000 | 53,000 | 15,317,000 | | 장 * 득 |
| 11 |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 384 | 384-2 | 전 | 423 | 333 | 90 | 58,000 | 58,000 | 58,000 | 19,314,000 | | 장 * 득 |
| 12 |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 384 | 384-3 | 전 | 423 | 13 | 410 | 58,000 | 58,000 | 58,000 | 754,000 | | 장 * 득 |
| 13 |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 350 | 350-2 | 답 | 1,945 | 14 | 1,931 | 46,000 | 44,000 | 45,000 | 630,000 | | 하 * * |
| 14 |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 350 | 350-3 | 답 | 1,945 | 225 | 1,720 | 46,000 | 44,000 | 45,000 | 10,125,000 | | 하 * * |
| 15 |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 1366-1 | 전필 | 답 | 112 | 112 | | 48,000 | 46,000 | 47,000 | 5,264,000 |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 32가길 | 박 * 관 |
| 16 |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 1050 | 1050-2 | 답 | 2,972 | 99 | 2,873 | 97,000 | 95,000 | 96,000 | 9,504,000 | | 박 * 남 |
| 17 |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 1094-1 | 전필 | 도 | 119 | 119 | | 47,000 | 47,000 | 47,000 | 5,593,000 | | 임 * 협 |
| 18 |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 1126-1 | | 도 | 9 | 9 | | 144,000 | 140,000 | 142,000 | 1,278,000 | 서울 종로구 부암동 241-2 | 김 * 운 |
| 19 |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 1033-1 | | 대 | 18 | 8 | 10 | 178,000 | 174,000 | 176,000 | 1,408,000 | | 장 * 문 |
| 20 |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 896-1 | | 도 | 101 | 17 | 84 | 45,000 | 43,000 | 44,000 | 748,000 | | 장 * 레 |

지 장 물 조 서

| 순번 | 소재지 | 지번 | 물건종류 | 구조 및 가격 | | 수량 | 단위 | 보상금액(원) | 비고 |
|----|-------------|------|------|-----------|----|----|----------------|---------|-------|
| | | | | 면적 | 가격 | | | | |
| 1 |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 1002 | 돌담 | 20*1.5(H) | | 30 | m ² | 750,000 | 하 * 수 |
| | " | " | 감나무 | R25 | | 1 | 주 | 245,000 | |